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일반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77억 3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100억 7천 9백만원
- 실제수납액 : 88억 5천 9백만원
- 불납결손액 : 2억 6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9억 5천 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억 5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87.9%(전년도 95.1%)임.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 결손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7,739	10,079	8,859	268	952	88%
세외수입	2,312	4,696	3,866	268	562	82%
경상적세외수입	960	1,263	1,238		24	98%
재산임대수입	276	544	523		21	96%
공유재산임대료	276	544	523		21	96%
사용료수입	501	509	509		1	100%
기타사용료	501	509	509		1	100%
수수료수입	18	20	20			1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8	20	20			100%
사업수입	21	20	20			100%
기타사업수입	21	20	20			100%

이자수입	144	169	166		3	98%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44	149	149			100%
기타이자수입	-	20	17		3	85%
임시적세외수입	1,352	3,433	2,628	268	537	77%
부담금	769	739	739			100%
자치단체간부담금	769	739	739			100%
과징금및과태료등	18	25	19		6	76%
변상금	18	25	19		6	76%
기타수입	565	2,037	1,852		185	91%
불용품매각대	29	42	42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85	584	493		90	84%
그외수입	451	1,411	1,316		95	93%
지난연도수입	-	632	18	268	346	3%
지난연도수입	-	632	18	268	346	3%
보조금	1,937	1,937	1,937			100%
 국고보조금등	1,937	1,937	1,937			100%
국고보조금등	1,937	1,937	1,937			100%
국고보조금	1,937	1,937	1,937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90	3,445	3,055		390	89%
 보전수입등	3,490	3,445	3,055		390	89%
전년도이월금	-	8	8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8	8			100%
융자금원금수입	3,490	3,438	3,048		390	8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490	3,438	3,048		390	89%

2. 세출결산

- 예산액 : 3조 6,802억 3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130억 1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6,932억 5천 1백만원
- 지출액 : 3조 6,747억 7천 2백만원
- 이월액 : 27억 1천 3백만원
- 보조금반납액 : 3백만원
- 불용액 : 157억 6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4%(전년도 0.2%)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천 4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50억 4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천 8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행정국	3,693,250	3,674,773	2,713	3	15,762	0.4%
총무과	25,837	25,202			635	2.5%
행정지원체계 강화	23,069	22,510			559	2.4%
물품관리	854	831			23	2.7%
행정장비구매	854	831			23	2.7%
청사관리	21,069	20,635			434	2.1%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6,205	15,963			242	1.5%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79	369			10	2.6%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81	373			8	2.1%
시청사 청소관리	1,690	1,635			55	3.3%
노후 시설물 개선	712	693			19	2.7%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32	331			1	0.3%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122	121			1	0.8%
시청사 내진보강	139	139			0	0.0%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800	724			76	9.5%
태양광 시설 설치	309	287			22	7.1%
행정관리 지원	1,146	1,044			102	8.9%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 니터링	60	51			9	15.0%
업무택시제 운영	250	199			51	20.4%
주요 시책사업 추진	80	54			26	32.5%
주요 시정행사 지원	296	296			0	0.0%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250	246			4	1.6%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 담관 운영	210	198			12	5.7%
행정운영경비 (행정국총무과)	2,768	2,692			76	2.7%
기본경비	2,768	2,692			76	2.7%
기본경비(총무)	2,768	2,692			76	2.7%
인사과	134,447	128,150			6,297	4.7%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 인사 운영	7,598	7,255			343	4.5%
포상관리	1,451	1,412			39	2.7%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36	935			1	0.1%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15	477			38	7.4%
인사관리 운영	6,147	5,843			304	4.9%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556	551			5	0.9%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81	45			36	44.4%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98	263			35	11.7%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89	86			3	3.4%
부조급여 지급	2,100	2,081			19	0.9%
공무직·공공안전관노사 관리	185	137			48	25.9%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838	2,680			158	5.6%
행정운영경비 (행정국인사과)	126,849	120,896			5,954	4.7%
기본경비	119	117			2	1.7%
기본경비(인사)	119	117			2	1.7%
인력운영비	126,730	120,778			5,952	4.7%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26,730	120,778			5,952	4.7%
인력개발과	50,990	49,123			1,867	3.7%
인적자원 역량 강화	50,902	49,035			1,867	3.7%
교육훈련	12,330	11,664			666	5.4%
장기국외훈련	3,659	3,582			77	2.1%
단기국외훈련	2,575	2,336			3	0.1%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 운영	14	12			12	14.3%
국내위탁교육훈련	4,244	4,044			200	4.7%
직장교육활성화	1,080	1,029			51	4.7%
명사초청 특강 등 운영	20	11			9	45.0%
학습조직 운영 지원	110	99			11	10.0%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0	18			2	10.0%
서울시 학습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95	85			10	10.5%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지능형 학습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13	448			65	12.7%
공무원 복지증진	32,464	31,426			1,038	3.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9,245	18,690			555	2.9%
직원 후생복지 지원	2,795	2,580			215	7.7%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857	1,634			222	12.0%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698	664			34	4.9%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500	1,500			0	0.0%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313	313			0	0.0%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5,970	5,964			7	0.1%
대여학자금 부담금	47	47			0	0.0%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38	33			6	15.8%
수련원 관리사업	6,108	5,945			163	2.7%
연수원 운영	6,108	5,945			163	2.7%
행정운영경비 (행정국인력개발과)	88	88			0	0%
기본경비	88	88			0	0%
기본경비(인력)	88	88			0	0%
자치행정과	3,436,675	3,433,198	40	3	3,433	0.1%
시·자치구간공동협력추진	15,754	15,537	40		177	1.1%
시·자치구간공동협력	15,754	15,537	40		177	1.1%
시·자치구 공동협력 추진	8,002	8,002			0	0.0%
자치회관 운영 및 주 민자치 활성화 지원	7,013	6,815	40		158	2.3%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41	241			0	0.0%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 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125	117			8	6.4%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 등) 유지 관리	180	180			0	0.0%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	73	62			11	15.1%
마포구 도화동 마을 문고 이중 슬라이드 서가 설치(시민참여)	20	20			0	0.0%
마포구 서강동 마을 문고 서가 추가 설치 (시민참여)	20	20			0	0.0%
마포구 망원1동 마을 문고 공간개선(시민 참여)	80	80			0	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54,120	50,861		3	3,259	6.0%
시민참여 강화	54,120	50,861		3	3,259	6.0%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348	317			31	8.9%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524	1,519			5	0.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92	88		3	0	0.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코디 네이터 지원·육성	5,270	5,227			43	0.8%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209	209			0	0.0%
시민 시상제도 운영	86	73			13	15.1%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946	935			11	1.2%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289	283			6	2.1%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8	18			0	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5,979	5,912			67	1.2%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관리	38,083	35,007			3,076	8.1%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770	766			4	0.5%
제주 4.3 사건 70주년 서울시 문화사업	290	290			0	0.0%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	200	200			0	0.0%
2018년 유해매장추 정지 안내표시판 관 리지원등(전국합동추 모제)(보조)	17	17			0	0.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366,647	3,366,647			0	0.0%
자치구교부금 (행정국 자치행정과)	3,366,647	3,366,647			0	0.0%
조정교부금	3,366,647	3,366,647			0	0.0%
행정운영경비 (행정국 자치행정과)	137	137			0	0.0%
기본경비	137	137			0	0%
기본경비(행정)	137	137			0	0%
일반예산(재무활동)	16	16			0	0%
보전지출 (행정국자치 행정과)	16	16			0	0%
반환금 및 기타	16	16			0	0%
정보공개정책과	3,481	3,302			179	5.1%
정보관리강화	3,118	2,968			150	4.8%
정보소통혁신	1,166	1,122			44	3.8%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656	622			34	5.2%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436	431			5	1.1%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74	69			5	6.8%
기록물 시설관리 (일반 회계)	1,952	1,846			106	5.4%
청도문서고 운영	80	78			2	2.5%
기록정보관리	1,872	1,768			104	5.6%
행정운영경비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363	334			28	7.7%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기본경비	363	334			28	7.7%
기본경비(정보)	363	334			28	7.7%
공무원수련원	976	948			28	2.9%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906	882			24	2.6%
수련원 관리사업	906	882			24	2.6%
수련원유지및 관리	151	148			3	2.0%
수련원 객실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597	585			12	2.0%
수련원 축탁계약직(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158	150			8	5.1%
행정운영경비 (공무원수련원)	70	66			4	5.7%
기본경비	70	66			4	5.7%
기본경비(수련원)	70	66			4	5.7%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3,693,250	3,674,773	3	2712	15,762	0.4%
기록관리강화	25,837	25,202			635	2.5%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134,447	128,150			6,297	4.7%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50,990	49,123			1,867	3.7%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436,675	3,433,198	3	40	3,433	0.1%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도시개발특별회계)	3,481	3,302			179	5.1%
서울기록원 건립	976	948			28	2.9%
행정운영경비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40,844	34,849		2,672	3,323	8.1%
기본경비	2,021	856		586	579	28.6%
기본경비(기록원)	38,823	33,993		2,086	2,744	7.1%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총1건(일반회계)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원 증가로 인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로

4백만원

총 1건에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총3건(일반회계3건)

- 2018년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

-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사업비 이체(일반회계)

5억 2천 8백만원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 이체(일반회계)

12억 5천 5백만원

- 「기본경비」 사업비 이체(일반회계)

2억 3천 7백만원

총 3건, 20억 2천만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1건(일반회계)

-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예산확보를 위해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에서 통계목간(포상금⇒기타보상금) 변경으로 총1건,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3건, 6억 2천 6백만원

- 명사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 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두차례 유찰되는 등 계약이 지연되었으며 적절한 용역 기간 확보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이 회계연도 경과하게 되어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천만원

서울기록원 준공(‘18.12) 및 개관(‘19.5) 시점을 고려하여 ‘서울기록원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홍보물 제작 사업’이 18년 3분기 발주되어 2018회계연도 내 준공기한 미도래로 ‘서울기록원’에서 「서울기록원운영관리」 사업비

3천 3백만원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준공기한 미도래함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디지털아카이브구축」 사업비

5억 5천 3백만원

총 3건, 6억 2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0억 9천 3백만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4천 4백만원

총 2개부처 6개 사업에 19억 3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9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을 불용시켰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 2018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채권현재액은 1,144억 8천만원으로
2017년도말에 비해 2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채권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회계	111,942	2,537	6,793	4,256	114,479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공유재산은

- 토지 208,913 m^2 8,938억 2천 6백만원,
 - 건물 191,766 m^2 4,438억 1천 9백만원,
 - 기타 30건 57억 1천 2백만원,
- 총 1조 3,433억 5천 7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수	면적(m^2)	가격	
합 계	1,296,211	47,145	-	115	400,679	1,343,356	
행정 재산	계	1,295,751	47,145	-	113	400,559	1,342,896
	공용재산	1,155,265	37,506	-	101	377,641	1,192,771
	공공용재산	140,486	9,639	-	12	22,918	150,125
	기업용재산	-	-	-	-	-	-
	보존용재산	-	-	-	-	-	-
일반재산	460	-	-	2	120	46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63개,
현재액 55억 2천 6백만원으로 2017년도 말에 비해
수량은 119개가 증가하고,
현재액은 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II. 특별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해당 없음.

2. 세출결산

- 예산액 : 259억 8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128억 3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88억 2천 3백만원
- 지출액 : 339억 9천 3백만원
- 이월액 : 20억 8천 6백만원
- 불용액 : 27억 4천 4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7.1%(전년도 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7억 4천 4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행정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 최종예산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행정국	38,823	33,993	2,086		2,744	7.1%
서울기록원	38,823	33,993	2,086		2,744	7.1%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8,823	33,993	2,086		2,744	7.1%
서울기록원 건립	38,823	33,993	2,086		2,744	7.1%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총1건, 259억 8천 5백만원

○ 2018년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 이체(도시개발특별회계)

총 1건, 259억 8천 5백만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1건, 20억 8천 6백만원

○ 사고이월

서울기록원 준공이 지연됨에 '서울기록원'에서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
20억 8천 6백만원

총1건, 20억 8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1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76,203	543,995	522,890	246,687	○ 시청사 임대 수입 증가 : 246,970천원(초과수납) - 18년 예산편성 시 시금고 변경을 예측못하고 예산 편성을 였으나,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던 대부료 감경조항이 미적용되어 예산액 대비 과다 징수됨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7,930	20,456	20,456	2,526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증가 : 2,526천원(초과수납) - 재활용품 매각 단가 상승에 따라 판매수입 증가
기타수입	불용품매각 대금	29,526	42,253	42,253	12,727	○ 공용차량 매각대금 증가 : 4,070천원 (초과수납) - 예산액 대비 낙찰 금액 소폭 증가 - 전기차 구매를 위해 승용차 1대 추가 매각
	시도비 반환금 수입	84,816	583,784	493,414	408,598	○ 시·도비반환금수입 증가 : 408,598 천원(초과수입) - 시 예산편성 당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 결산 평균반환금으로 편 성하였으나, '17년 대선 등의 사유 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이 이 루어지지않아 집행잔액 발생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그외수입	450,897	1,411,432	1,316,295	865,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수입 865,398천원(초과수납) - 자치구직원 수련원시설 이용료 수입 예산액 대비 증가 - 힐링센터 퇴직 총당금 및 이자 반납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 급여, 수당 반납금 등

○ 특히, ‘기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매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행정국은 ‘기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자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이므로 편성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이자수입	0	0	17,214	0	1,070	0	76
지난연도수입	20,705	0	18,102	0	50,605	0	9,14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7,749	0	27,416	0	2,029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상세내역 현황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0	19,795	17,214	17,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하관 운영보조금 이자: 3,504천원 ○ 주민참여예산 이자: 915천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이자 : 284천원 ○ 선거관리경비 관련 이자 : 11,508천원 ○ 북한이탈지원사업 이자: 73천원 ○ 법정단체 지원 등 이자: 373천원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수입	0	632,006	18,102	18,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광장 변상금 지난연도 미납분 : 3,422천원 ○ 소송비용 회수 미납분 : 105천원 ○ 징계부가금 미납분 : 2,140천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7,749	7,749	7,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5,252천원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97천원

○ 한편, 행정국은 시의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행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공유재산 임대료	543,995	522,890	21,105	0	0	0	194,734	192,630	2,104
기타 사용료	509,118	508,551	568	0	0	0	523,916	518,203	5,713
기타 사업수입	-	-	-	0	0	0	21,062	20,212	850
민간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	-	-	0	0	0	228,502	227,662	840
기타이자 수입	19,795	12,714	2,581	2,857	1,070	1,787	0	0	0
변상금 및 위약금	24,717	18,612	6,105	114,778	63,855	50,923	89,488	37,998	51,490
시도비 반환금수입	583,784	493,414	90,370	110,371	110,063	308	82,972	82,689	283
그외수입	1,411,432	1,316,295	95,137	900,941	777,141	123,801	611,965	597,760	14,205
지난연도 수입	632,006	18,102	345,904	188,669	50,605	138,064	116,162	9,145	107,017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3,437,700	3,047,700	390,000	3,760,000	3,643,000	117,000	3,881,500	3,826,500	55,000

-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연도 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반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처리 되고 있음.
 - 특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지난년도 수입 중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의 경우는 특별한 수납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변상금의 이월 및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103)		951,771	
총무과 (73)	소 계 (총무과)		337,451
	공유재산 임대료 (1건)	시청사 임대료(발간실)	2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 기한(19.1.15) 내 완납 (21,105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기타사용료 (47건)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568	• 체납 47건(568천원)
	변상금 (2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6,105	• 체납 2건(6,105천원)
	지난연도 수입 (23건)	부설주차장 이용료	69	• 체납 1건(69천원)
		서울광장 사용료	2,702	• 체납 1건(2,702천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185,001	• 체납 12건(185,001천원)
		소송비용 회수	1,020	• 체납 3건(1,020천원)
		행정대집행 비용	120,881	• 체납 6건(120,881천원)
인사과 (9)	소 계 (인사과)		109,228	
	그외수입 (6건)	징계부가금	75,560	• 체납 6건(75,560천원)
	지난연도 수입 (3건)	소송비용	1,511	• 체납 1건(1,511천원)
		징계부가금	32,157	• 체납 2건(32,157천원)
인력 개발과 (11)	소 계 (인력개발과)		409,578	
	그 외수입 (3)	국외훈련비 정산금	19,078	• 체납 2건(19,078천원)
		임대아파트 퇴거지연 이자	500	• 체납 1건(500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상환수입	390,000	• 체납 8건(390,000천원)
자치 행정과 (10건)	소 계 (자치행정과)		95,514	
	기타이자 수입 (5)	2017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보조금 이자반납분	47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 후 반납
		2015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359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 후 반납
		2017년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2,175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 후 반납
	시도비 반환금수입 (3)	2017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5,445	• 84,897(19.4.30수납)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 후 반납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25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 후 반납
	지난연도 수입 (2)	그외수입	1,631	• 체납 1건
		소송비용	932	• 체납 1건

최근 3년간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No	부 과 대 상	부과일자	부과금액	징 수 액 (가산금포함)
2019년(5월 20일 기준)				
2018년			24,508,640	18,611,590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705	2,551,800	2,551,800
2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730	3,477,600	3,477,600
3	○○○	20180824	2,823,000	-
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829	3,974,400	3,975,700
5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914	4,293,600	4,320,420
6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017	3,744,450	3,744,450
7	○○○	20181018	3,102,170	-
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81121	492,720	492,720
9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20181121	48,900	48,900
2017년			111,947,780	67,274,070
1	○○○(목사)	20170119	88,200	88,200
2	○○○(국민저항본부)	20170217	9,496,100	9,496,100
3	○○○(국민저항본부)	20170306	7,856,970	7,900,880
4	○○○(국민저항본부)	20170324	12,926,180	12,930,420

5	○○○(국민저항본부)	20170407	9,738,000	9,738,000
6	○○○(국민저항본부)	20170525	23,290,020	256,850
7	○○○(국민저항본부)	20170613	8,346,930	-
8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20170324	16,063,200	16,063,200
9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20170526	7,552,800	7,552,800
10	○○○(신의한수대표)	20170306	37,200	37,200
11	○○○(신의한수대표)	20170306	43,200	45,660
12	○○○	20170508	678,640	749,190
13	○○○	20170712	2,257,140	2,415,570
14	○○○	20170830	13,573,200	-
2016년			86,166,800	57,292,800
1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20160129	168,000	168,000
2	기아자동차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20160129	197,400	197,400
3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160304	18,000	18,000
4	○○○	20160304	19,375,200	-
5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60519	144,000	144,000
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60613	9,160,800	9,160,800
7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613	8,671,800	8,671,800
8	○○○	20160613	9,498,800	-
9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20160829	13,744,800	13,744,800
10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816	5,050,800	5,050,800
1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161012	12,000	12,000
1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1228	370,800	370,800
13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161228	48,000	48,000
1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20161228	19,706,400	19,706,400

○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7천 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징계부가금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 2¹⁾)에

-
- 1)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징계부가금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2018년	그 외 수입 (6)	징계부가금	75,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납 6명(총 체납금 75,560천원) 중 2명 납기후 완납('19.1~3. 4,54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1명(894천원)은 인사과 관리 - 미납3명(70,124천원)은 38세금징수과 이관
2017년	지난연도 수입 (1)	징계부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납 1명(체납금 8,000원) : 38세금징수과 이관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4건은 징수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관리중임.

○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내역은 29건에 9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54건, 4억 3천 2백만원) 대비 건수(감 25건)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증 5억 1천 9백만원)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특히, 1천만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15년 8건, 1억 7천 9백만원 → '16년 8건, 1억 8천 2백만원 → '17년 11건, 3억 4천만원 → '18년 9건, 9억 1천만원)에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계	금 액 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8	건수	29	4	5	9	2	9	
	금액	951,771	121	3,300	24,405	14,105	909,840	
2017	건수	54	12	15	9	7	11	-
	금액	431,883	358	5,308	30,836	54,566	340,815	-
2016	건수	36	4	11	8	4	9	-
	금액	237,501	231	4,993	23,530	26,671	182,075	-
2015	건수	34	4	8	8	6	8	-
	금액	240,524	188,260	2,467	18,109	40,142	179,617	-
2014	건수	14	5	6	1	-	2	-
	금액	73,844	134	1,465	2,244	-	70,000	-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8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9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9%를 집행(6백만원, 불용률 0.1%)하였으나,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 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 수 발견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우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총무과의 경우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사업 중 ‘소모품비’로 예산은 1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은 1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1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중 ‘투어 안내 영상콘텐츠 업그레이드’ 항목은 예산은 1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3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중 ‘행정장비 수리비’는 예산(1천7백만원) 보다 1천 2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기타 소모품 구입비’의 경우도 예산(1억4천2백만원) 보다 2억 2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항목의 경우는 당초 예산(560만원) 보다 3천4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총 25건에 3억 5천 3백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액 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음.

〈 2018회계연도 총무과 사무관리비 초과집행 현황 및 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	산출내역		지출내역	차액
	세부내역	편성액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서울로운영단 임차료, 관리비	68,850,000	68,851,200	△1,200
	소모품(장갑, 세척제 등)	18,096,000	119,533,350	△101,437,350
	피복 및 안전화	21,600,000	22,856,100	△1,256,100
시청사 청소관리	시청사 화장실 화장지	115,872,000	124,184,140	△8,312,140
	종량제 봉투 구입비	48,000,000	51,600,000	△3,600,000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투어 안내 영상 콘텐츠 업그레이드	12,216,000	35,765,680	△23,549,680
	중학교 단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45,784,000	49,130,420	△3,346,420
	진로체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용역	4,290,000	7,079,600	△2,789,600
	시청사 투어 청소년 해설사 운영	2,510,000	3,997,410	△1,487,410
	시민이용공간 전시 운영비(기획, 상설전시)	150,000,000	159,985,150	△9,985,150
	미술품 대여 및 운영비	805,400	8,864,810	△8,059,410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0	11,489,000	△1,489,000
	청사 유희공간 기획	20,000,000	20,059,920	△59,920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근무복 구매비	2,460,000	3,176,500	△716,500
주요 시정행사 지원	시무식 행사장 임차료	19,450,000	23,557,000	△4,107,000
	음향 영상장비 임차료	10,000,000	10,200,000	△200,000
	행사소모품 등 구매	30,000,000	35,551,350	△5,551,350
기본경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3,913,000	6,745,200	△2,832,200
	행정장비 수리비	17,388,000	28,999,300	△11,611,300
	도서구입비	350,000	1,552,050	△1,202,050
	기타 소모품 구입비	142,400,000	344,040,280	△201,640,280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5,600,000	39,598,360	△33,998,36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79,700,000	81,761,220	△2,061,220
	피복비	56,700,000	69,382,430	△12,682,430
근조기 관리 및 배송	18,900,000	37,360,360	△18,460,360	

- 인사과의 경우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사업 중 ‘기타위원회’ 회의비는 편성한 예산 1천 5백만원 보다 3천 4백만원을 초과하여 4천 9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11건에 6천 1백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 대비 초과 집행하였으며, ‘개방형 선발 헤드헌터 활용 수수료’는 2천 만원을 편성후 전액 미집행하였음.

- 인력개발과의 경우는 “단기국외훈련”사업 중 ‘단기직무훈련학자금’ 1천 4백만원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중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용’ 7천 7백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본관 체력단련실 운영’ 항목은 편성한 예산(4억2천6백만원)보다 4천 6백만원을 초과한 4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2건에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하였음.
 -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중 ‘제안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비 2백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경영평가 등 수행’비 240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의 ‘기록화 작업’항목은 편성한 예산(8천만원) 보다 1천 9백만원을 초과한 9천 9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건에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바 있음.
 - 정보공개정책과는 “문서시스템 기능확대”사업의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 수당’비 3백만원과,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사업의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제작’비 9백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하였음.
- 이외에도 행정국은 예산편성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65건에 이르는 바, 행정국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무시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 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불필요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지양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은 인사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실적 가점 평가의 외부기관 용역실시, 공무원증 발급, 장애공무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위해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수요는 예상보다 적은 반면, 시각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가 당초 예상 수준인 7명보다 1명이 증가(8명)하여 전용한 것임.

〈 2018회계연도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	△4,000		2018- 12-11	46,000	46,000	0 (0%)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17,461		4,000		121,461	121,325	136 (0%)

○ 또한, 행정국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 등을 위해 “직원격려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이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에서 ‘기타포상금’으로 총1건에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270,000	△20,000		2018- 07-05	250,000	249,697	303 (0%)
	기타보상금	40,000		20,000		60,000	60,000	0 (0%)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 13. (생략)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개편 및 시행(‘19.7.1 전면시행) 예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장애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동권, 근무환경 등에 대한 편의증진 등에 대한 점검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행정국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5.16% (2019.5.31.기준, 단위:명 / 별도정원 포함)

구 분	정 원	장애인 공무원 수 (A+C)	실 장애인 공무원 수 (B+C)	장애정도			장애인 고용률 [(A+C)/ 정원×100]	
				중증		경증(C)		
				장애인 공무원 수 (A=B×2)	실 장애인 공무원 수(B)			
계	45,281	2,338	1,939	798	399	1,540	5.16%	
서울시	시	10,928	359	309	100	50	259	3.29%
	자치구	34,353	1,979	1,630	698	349	1,281	5.76%

○ 행정국은 최근 3년간('16년2건(5천 3백만원)→ '17년5건(1억 4천 6백만원) →'18년 1건(4백만원)) 8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도 총7건 ('16년5건(4억 6천 2백만원)→ '17년1건(5억원)→'18년 1건(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행정국 전용/변경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구분	세부사업		감액	증액			
'18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총 1건	167,461	△4,000	4,000	167,461	167,325	136
'17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 5건	12,535,129	△146,618	146,618	12,535,129	11,160,950	1,374,179
'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등 총 2건	1,662,182	△53,364	53,364	1,662,182	1,416,801	245,381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구분	세부사업		감액	증액			
'18년	직원격려 프로그램 운영 총 1건	310,000	△20,000	20,000	310,000	309,697	303
'17년	국민운동단체 등 보조금 지원 총 1건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6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 5건	22,683,471	△462,000	462,000	22,683,471	21,438,927	1,244,544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사업

1)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실 집행 개선 필요

○ 행정국은 관련 법률 등에(「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및 「지방재정법」) 근거하여 총 5개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계	766,121	745,996	20,291	19,766	165	360	97.4%
새마을회	487,121	469,839	17,408	17,283	125	0	96.5%
자유총연맹	60,000	60,000	7	0	7	0	100%
바르게살기	60,000	60,000	11	0	11	0	100%
민주평통	59,000	56,793	2,212	2,207	5	0	96.3%
자율방범연합회	100,000	99,364	653	276	17	360	99.4%

-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2017회계연도(89%)보다 집행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97.4%)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국은 집행률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이 42.8%로 2017년(평균 25.6%)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8.0%), 자율방범연합회(16.0%), 서울특별시 새마을회(4.2%)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카드(클린카드) 사용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인건비 지출비율 (%)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계	745,996	318,959	370,918	56,119	0	0	42.8%	49.7%	7.5%
새마을회	469,839	200,515	239,025	30,299	0	0	42.7%	50.9%	6.4%
자유총연맹	60,000	48,519	3,641	7,840	0	0	80.9%	6.1%	13.1%
바르게살기	60,000	49,493	600	9,907	0	0	82.5%	1.0%	16.5%
민주평통	56,793	4,528	47,158	5,107	0	0	8.0%	83.0%	9.0%
자율방범 연합회	99,364	15,904	80,494	2,966	0	0	16.0%	81.0%	3.0%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⑤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로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로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에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이 저조하거나 서울시 법정단체 중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83.0%), 자율방범연합회(81.0%), 서울시 새마을회(50.9%))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엄중한 사후 제재조치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업무택시제

-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택시제’사업에 2억 5천만원(전년과 동일)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 1백만원을 불용 처리(21%) 하였음.

〈“업무택시제” 사업의 2018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	㉡	㉠-㉡-㉢	
업무택시제	계	250,000	198,712	51,288	21%
	사무관리비	250,000	198,712	51,288	21%

- 최근 3년간 업무택시제 사업의 불용액(2016년 160만원→2017년 7,400만원 → 2018년 5,120만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아니라,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지방선거 실시(2018.6.13.)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지방선거 실시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불용 발생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전례답습적으로 소요예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I 업무택시 운영 개요

- 기 간 : '19.1~12월
- 대 상 : 본청 부서 직원
- 이용업체 : T-money 결제 단말기 장착된 서울 택시(약 7만대)
- 이용방법 : 도로 주행하는 서울 택시 이용 후 「모바일 앱」 결제

〈모바일 앱 결제 운영개요〉

- ▶ 결제 서비스 명칭 : T-money pay App
- ▶ 서비스 운영 업체 : (주)한국스마트카드
- ▶ 본청부서 서비스 개시일 : '17.1.3(화)

- 이용기준 : **공무출장시 근무시간(평일 09시~평일 19시) 중 근무지 내(서울시 전역)**
 -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외 및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이용시 소명자료 제출
 - ※ 소명자료 : 출장복명서(메모보고 포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시 출장여비 감액지급(2만원⇒1만원)

- 또한,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간 이용률과 근무시간내외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 외에 사적사용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제도운용상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한편, 행정국은 업무택시제 사업예산을 매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용차의 정수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정수는 21대 인데 반해 현재 23대를 운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정해진 기준보다 2대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어, 행정국의 방만한 물품관리 및 재정낭비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행정국은 현재 본청(총무과)기관운영 공용차량(57대)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의 감액조정 등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적정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업무택시제 이용 현황〉

월별	근무시간	이용횟수(회)	이용인원(명)	이용금액(천원)	이용사유
합계	계	11,473	17,921	138,486	
	근무시간내	8,196	14,469	91,866	
	근무시간외	3,277	3,452	46,620	
1월	근무시간내	984	1,762	10,73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99	418	5,752	공무출장
2월	근무시간내	826	1,464	9,23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00	323	4,260	공무출장
3월	근무시간내	1,033	1,905	11,40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39	364	4,570	공무출장
4월	근무시간내	941	1,664	10,06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86	297	3,884	공무출장
5월	근무시간내	742	1,416	8,70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31	258	2,989	공무출장
6월	근무시간내	686	1,245	7,88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34	248	3,081	공무출장
7월	근무시간내	885	1,553	10,12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76	404	4,778	공무출장
8월	근무시간내	1,264	2,043	14,09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96	615	8,709	공무출장
9월	근무시간내	835	1,417	9,62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16	525	8,597	공무출장

부 서 명	근무시간	이용횟수 (회)	이용인원 (명)	이용금액 (천원)	이용사유
합 계	계	264	420	4,127	
	근무시간내	254	405	3,964	
	근무시간외	10	15	163	
데이터 센터	근무시간내	34	60	53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1	17	공무출장
도시 기반 시설 본부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동부 공원 녹지사업소	근무시간내	2	4	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보건 환경 연구원	근무시간내	3	4	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	12	121	공무출장
서북 병원	근무시간내	18	32	21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시립미술관	근무시간내	14	19	22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시간내	33	69	48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	2	25	공무출장
어린이병원	근무시간내	18	21	3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은평 병원	근무시간내	22	22	49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역사박물관	근무시간내	14	14	19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역사편찬원	근무시간내	11	17	2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인재개발원	근무시간내	50	90	70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한강사업본부	근무시간내	35	53	45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부서명	근무시간	이용횟수 (회)	이용인원 (명)	이용금액 (천원)	이용사유
합계	계	11,473	17,921	138,486	
	근무시간내	8,196	14,469	91,866	
	근무시간외	3,277	3,452	46,620	
감사위원회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경제진흥본부	근무시간내	1,553	3,006	18,26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6	94	579	공무출장
관광체육국	근무시간내	356	766	3,77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9	12	108	공무출장
민생사법경찰단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기획조정실	근무시간내	450	814	5,52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31	436	9,214	공무출장
기후환경본부	근무시간내	202	397	2,4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1	76	1,061	공무출장
대변인실	근무시간내	78	105	841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663	695	7,450	공무출장
도시계획국	근무시간내	97	243	1,04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4	11	공무출장
도시공간개선단	근무시간내	24	48	27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4	공무출장
도시교통본부	근무시간내	95	182	1,2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1	11	144	공무출장
도시재생본부	근무시간내	434	697	3,29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2	17	70	공무출장
지역발전본부	근무시간내	70	161	82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13	공무출장
문화본부	근무시간내	358	628	4,0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8	26	236	공무출장
물순환안전국	근무시간내	159	292	1,9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8	11	171	공무출장

복지본부	근무시간내	898	1,697	10,1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4	29	140	공무출장
비상기획관	근무시간내	30	70	35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시간내	288	414	3,2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	8	102	공무출장
시민건강국	근무시간내	150	293	1,9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8	14	83	공무출장
시민소통기획관	근무시간내	153	291	1,72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6	9	78	공무출장
소방재난본부	근무시간내	4	4	6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63	264	4,636	공무출장
안전총괄본부	근무시간내	317	616	3,81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6	30	476	공무출장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시간내	268	455	3,13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	7	47	공무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근무시간내	251	435	2,98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	4	64	공무출장
재무국	근무시간내	24	40	32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정보기획관	근무시간내	25	50	33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10	공무출장
주택건축국	근무시간내	111	204	1,36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	3	25	공무출장
평생교육정책관	근무시간내	149	288	1,87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	9	56	공무출장
푸른도시국	근무시간내	321	623	3,86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	7	47	공무출장
행정국	근무시간내	1,331	1,650	13,24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663	1,680	21,795	공무출장

라.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필요

-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4천만원),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3천 3백만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5억 5천 3백만원) 총 3건에 6억 2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시설비(7억 2천만원)’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13억7천만원) 등 1건에 총 20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회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년	일반 회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14,800	202,926	162,929	-	39,997	11,874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218,080	216,549	183,299	-	33,250	1,531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산개발비	1,255,454	1,186,006	632,809	-	553,197	69,448
	특별 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32,902,583	31,201,117	29,715,629	-	716,334	2,470,620
			자산및물 품취득비	4,200,000	4,153,183	2,755,666	-	1,370,000	74,334
2017년	일반 회계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139,269	-		139,269	416,003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 활성화	사무관리비	3,751,331	3,299,469	3,278,469		21,000	451,86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무관리비	6,883,871	6,814,865	6,795,665		19,200	69,005
	특별 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	395,272	-
			시설 부대비	32,000	9,193	9,193	-	22,807	-

-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23억 7천 7백만원(63.7%)을 명사이월 시킨 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165억 2천 9백만원(88.9%)을 이월)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바 있고, 2018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20억 9천만원을 사고 이월 시켰음.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2018년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구분	통계목					
2018	계	38,823,470	36,876,277	33,993,273	2,086,334	2,743,863
	시설비	32,902,583	31,201,117	29,715,629	716,334	2,470,620
	감리비	1,665,272	1,488,755	1,488,756	0	176,516
	시설부대비	55,615	33,222	33,222	0	22,393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000	4,153,183	2,755,666	1,370,000	74,334
2017	계	18,264,373	18,241,566	5,426,015	12,838,359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395,272	-
	시설부대비	32,000	9,193	9,193	22,807	-
2016	소계	18,140,000	5,209,976	1,611,254	16,528,746	
	시설비	16,638,000	4,509,976	1,151,254	15,486,746	
	감리비	1,470,000	700,000	460,000	1,010,000	
	시설 부대비	32,000	-	-	32,000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향후 행정국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마. 민간위탁금 및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금 관련 - 과도한 전용 사용의 지양

- 2018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59억 3천 4백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58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 4백만원(1.8%)을 불용 처리하였음.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예산〉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5,934,525	5,934,525	5,830,265	104,260	1.8%	
서천연수원	2016.7.1	2018.12.31	일반	2,018,148	2,018,148	2,018,148	0	0	
수안보연수원	2017.6.1	2019.12.31	일반	2,019,600	2,019,600	2,019,600	0	0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2017.10.1	2020.9.30	일반	1,500,000	1,500,000	1,417,091	82,909	5.5	집행잔액
힐링센터 쉼표운영	2016.2.23	2018.12.31	일반	396,777	396,777	375,426	21,351	5.3%	집행잔액

- ‘서울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15억원 중 14억 1천 7백 만원을 집행하고 8천 3백만원을 불용시켰으며, ‘힐링센터 쉼표운영’ 사업은 3억 9천 7백만원 중 3억 7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1백만원을 불용시켰는바, 행정국에서는 민간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위탁 사업 중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억 9천 1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18년 시청직장 어린이집 운영 예산 전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시청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83,172		290,588	'17.10.13	973,760	973,760	- (-)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9,143,568	290,588			138,852,980	138,852,360	620 (-)

○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 전용사용은 의회 보고 의무가 없고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바, 행정국은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전용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2018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원금 규정 미준수, 퇴직연금 및 보험금 관리 부실, 물품 및 소모품 수불 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지적되었는 바, 물품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은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수안보 회계감사보고서〉

전기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정체적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대한 실사를 해서 물품을 정리하고, 개별부서가 액셀로 작성하는 대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 가능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품목인지를 판단할 때는 관리자의 자체판단 보다는 규정을 만들어 규정대로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물품관리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공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또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내부규정이 미비함.
재투자비용처럼 후생복지지원금도 운영비와는 상관없는 자금이므로 현재의 초과수익금통장으로 이체 후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후생복지지원금을 운영비와는 분리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 후 집행하고 있음
수탁관리자는 전기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기로 협약하였음. 이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기에 비록 납입기간에 대한 여유는 있으나, 매 사업연도마다 일부씩 적립해 나가면서 적립비율을 차츰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수탁관리자는 2018년도에 추가 불입하여 2017년말 적립비율 22%에서 2018년도말 적립비율은 62%로 상승함.

〈2018년 서천 회계감사보고서〉

전기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p>물품관리대장에 대한 전체 실사 및 공개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대한 실사를 해서 물품을 정리하고, 개별부서가 역행로 작성하는 대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 가능한 물품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부서는 연수원전체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말재고로 기록하는 반면, 일부부서는 창고에서 출고하지 않은 재고를 기말재고로 기록하고 있어 부서간 관리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품목인지를 판단할 때는 관리자의 자체판단보다는 규정을 만들어 규정대로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음</p>	<p>물품관리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공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부서는 연수원전체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말재고로 기록하는 반면, 일부부서는 창고에서 출고하지 않은 재고를 기말재고로 기록하고 있음. 또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내부규정이 미비함.</p>
<p>후생복지지원금도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 후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재투자비용처럼 후생복지지원금도 운영비와는 상관없는 자금이므로 현재의 초과수익금통장으로 이체 후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p>	<p>후생복지지원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 후 집행하고 있음.</p>
<p>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수탁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수탁자가 사용하고 다시 입금해 놓았으나, 수탁자의 운영자금이 아닌 서천시에 반납할 금액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p>	<p>당기에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당기에는 수탁자가 임의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 후 반납하였음.</p>

2) 출연금 관련

-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 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 ㉡	지출원인 행위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잔 액 ㉦ - ㉤ - ㉥
						계	명시	사 고	
2018	4,849,821	0	4,849,821	4,739,346	4,739,346	0	0	0	110,475
2017	3,331,205	0	3,331,205	3,268,670	3,268,670	0	0	0	62,535
2016	2,741,058	6,315	2,747,373	2,583,186	2,583,186	0	0	0	164,187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 중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은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사유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증액	전용일				
인건비	인건비	급여	31,600	0	0	18.10.31	31,600	30,731	869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동행 리더그룹 성장 기반 교육과정 개발 신규 추진, 동행 브랜드 개발 용역비 및 다이어리 제작, 프로보노센터 운영 모델 연구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
		제수당	9,000	0	0		9,000	8,999	1	
		기간제근로자 보수	29,500	0	15,000		44,500	43,100	1,400	
		퇴직급여	1,600	0	0		1,600	1,600	0	
경비	경비	복리후생비	1,300	0	0		1,300	1,230	70	
		여비	47,000	0	0		47,000	44,393	2,607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46,400	0	15,000		261,400	250,339	11,061	
		소모품비	3,100	0	0		3,100	1,600	1,500	
		도서인쇄비	21,240	6,030	0		15,210	14,651	559	
		수선유지비	4,500	0	0	4,500	4,500	0		
		차량유지비	622,380	593,216	29,164					
		보험료	739,350	116,970	0					
		지급수수료	3,000	1,000	0	2,000	1,851	149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사유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증액	전용일				
		업무추진비	0	0	6,900		6,900	6,860	40	
		관서업무비	40,000	0	5,000		45,000	44,224	776	
		자산취득비	6,900	0	28,100		35,000	34,920	80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113,850	0	85,291		201,560	201,560	0	

- 한편, 이러한 행태는 행정국의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는 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여된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지속적 예산 불용 사업의 검토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전체규모(2.1%) 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업무택시제운영(사무관리비)”, “기본경비(국내여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국외업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기타보상금)” 등 총21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업무택시제운영 (사무관리비)	250,000	198,712		51,288	21%	18.6.13.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 감소
기본경비(총무과) (국내여비)	244,110	193,574		50,536	21%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국외업무여비)	50,000	35,595		14,405	29%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53,884		26,116	33%	18.6월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행사, 홍보, 간담회 개최 등이 제한되어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기타보상금)	4,224	2,672		1,552	37%	4월~12월 운영 및 관람동선 정비로 2인에서 1인 운영 체제 변경
청년·명예퇴직자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2,734		866	24%	퇴임식 개최 관련 집행잔액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	115,910	87,514		28,396	24%	공무직 채용경비 집행잔액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	81000	44,557		36,443	45%	신청인원 및 대상기간이 예상치를 하회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공공운영비)	16,440	0		16,440	100%	급여체계, 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시스템 미사용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360	2,460		900	27%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2,000	8,565		3,435	29%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10,200	6,218		3,982	39%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 정 학술용역 실시 (사무관리비)	3,000	850		2,150	72%	용역계약시 제반비용을 추가포함

세부사업 (통계목적)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기본경비 (정보공개정책과) (사무관리비)	70,206	47,259		22,947	33%	기록문화팀(6명) 인원이 서울기록원 조직(신설, 18년 1월)으로 편입됨에 따른 부서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 발생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무관리비)	3,000	0		3,000	100%	정보소통광장과 통합 발주로 인해 지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무관리비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잔액 발생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52,183	0		252,183	100%	당초 공사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고 청사시설관리·경비·청소용역 비 3개월분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준공시점이 연장되어 전액 불용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9,900	23,580		6,320	21%	승합자동차 구매 집행 잔액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부대비)	55,615	33,222		22,393	40%	장기간에 걸친 계속사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 및불요불급 집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건축집행으로 발생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특정업무경비)	15,000	8,275		6,725	45%	정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충원 시기가 지연되어 집행잔액 발생
기본경비(서울기록원) (공공운영비)	237,505	1,702		235,803	99%	당초 공사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고 편성된 3개월 분의 전기·통신요금 등 수수료 예산 전액(231백만원)과 자동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5백만원) 불용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기타보상금)	6,400	0		6,400	100%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여 2개월 예산 편성하였으나 준공시점이 연장되어 전액 불용

1) 공무원 · 공공안전관 노사관리(공공운영비) 사업

- “공무원 · 공공안전관 노사관리”사업은 서울시 본청 ·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들의 관리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시켰음.

예산(안) 설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84,486	184,486	131,926	△52,560	△28
사무관리비	115,910	115,910	63,350	△52,560	△45
공공운영비	16,440	16,440	16,440	0	0
행사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0
포상금	32,136	32,136	32,136	0	0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7,000,000원*12% = 16,440천원	○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7,000,000원*12% = 16,440천원
	증감사유	
	- 공무원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일부감액	

- 본 사업비는 공무원 급여체계 및 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 시스템 재설계(2020년 발주예정)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전액 불용된 바,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만을 편성하는 부서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며, 허술한 예산 편성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무관리비) 사업

-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사업은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 체제 강화 및 운영을 위해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정보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체예산(4억3천6백만원)중 ‘사무관리비’는 3백만원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시켰음.
- 당초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 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민감정보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자문 및 참석수당을 위한 것이었으나, 정보소통광장과 통합발주됨에 따라 자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사업(5억6천4백만원) ‘사무관리비(3백만원)’에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임.

예산(안) 설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36,279	436,279	436,279	0	0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0	0
공공운영비	117,841	117,841	162,090	44,249	37
전산개발비	315,438	315,438	271,189	△44,249	△14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150,000원*20명 = 3,000천원	○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150,000원*20명 = 3,000천원
	증감사유	

○ 본 사업과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사업은 정보소통광장의 정보 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두 사업은 내용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등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부 추진경위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음.

3)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공공운영비) 사업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사업은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5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의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2억5천2백만원·불용률 99%),’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상당한 규모를 불용 처리하였음.

□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28,213	528,213	1,709,136	1,180,923	223
사무관리비	218,080	218,080	43,000	△175,080	△80
공공운영비	252,183	252,183	1,562,300	1,310,117	51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650	6,650	8,000	1,350	20
특정업무경비	15,000	15,000	15,000	0	0
기타보상금	6,400	6,400	44,000	37,600	587
자산및물품취득비	29,900	29,900	36,836	6,936	23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99,830,000원 = 99,830천원	○ 역량활동 기부자 교육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전문가 회의 10,500,000원 = 10,500천원	○ 근무자 유니폼 구매 4,000,000원 = 4,000천원
	○ 서울기록원 홍보 70,000,000원 = 70,000천원	○ 서울기록원 운영(보존용품 등) 소모품 구입 19,000,000원 = 19,000천원
	○ 역량활동 기부자 운영 및 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기록관리 실무교육 1,000,000원*10개월 = 10,000천원
	○ 근무자 유니폼 구매 4,000,000원 = 4,000천원	
	○ 서울기록원 운영 소모품 구입 23,750,000원 = 23,750천원	
	증감사유	
	기록화사업 및 홍보예산 서울기록원 기록수집관리 사업으로 이관	
공공운영비	○ 서울기록원 경비 용역 34,708,000원*3개월	○ 서울기록원 경비 용역 352,909,700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124천원 ○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36,077,000원*3개월 = 108,231천원 ○ 서울기록원 청소용역 13,276,000원*3개월 = 39,82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2,910천원 ○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389,889,500원 = 389,890천원 ○ 서울기록원 청소용역 147,919,200원 = 147,920천원 ○ 청사 유지관리 176,120,000원 = 176,120천원 ○ 공공요금 490,200,000원 = 490,200천원 ○ 자동차 유지관리비 5,260,000원 = 5,260천원
	증감사유	
	임시개관(2019.2월) 이후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반영 노임단가 상승(약 9%)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일수 신규 적용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유지관리 예산 사업비로 편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운영 6,650,000원 = 6,6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운영 8,000,000원 = 8,000천원
	증감사유	
	개관에 따른 증액	
특정업무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민활동비 50,000원*25명*12월 = 1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민활동비 50,000원*25명*12월 = 15,000천원
	증감사유	
	증감없음	
기타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 8,000원*20명*20일*2개월 = 6,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 11,000원*20명*20일*10월 = 44,000천원
	증감사유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18년 2개월산정 → '19년 10개월 산정), 단가 상승	
자산및물품취 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자동차 구매 29,900,000원 = 29,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편의 및 시설관리용품 구입 18,088,000원 = 18,088천원 ○ 사무용 집기 구입 18,748,000원 = 18,748천원
	증감사유	
	시민 편의 증대, 시설물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물품 및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른 운용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사업의 높은 불용률에 대해서 행정국은 당초 공사계획 대비 준공일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청사관리, 경비, 청소용역 등이 불용되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당초 터파기 공사시 암반지형 발생에 따라 공사의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전 타당성 등 분석 없이 추진되어 예산의 사장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